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374호 2015. 11. 9. (월)

【조 례】

- 정선군 조례 제2456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1
- 정선군 조례 제2457호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5
- 정선군 조례 제245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
- 정선군 조례 제2459호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4
- 정선군 조례 제246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6
- 정선군 조례 제2461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9

【규 칙】

- 정선군 규칙 제126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1

조 례

제225회 정선군의회(2015. 10. 21.)에서 의결된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1월 9일

정 선 군 수

인

정선군 조례 제2456호

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선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소상공인”이란 정선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경영안정 지원”이란 정선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가 소상공인의 창업,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사업장”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경영안정 상담 등)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영상담, 자문 및 교육
2. 해당 생산제품의 판매·소비 촉진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시설개선 등 예산지원)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·수리

2.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대상 등)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, 군에서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,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·공고 등) ① 군수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의 규모·선정기준, 지원절차·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,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.

제7조(현지조사 및 선정)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.

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의 제한) ① 지원대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
2.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선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
3.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

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재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원대상자 선정 및 해당 사업비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(互選)하는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한다.
-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시책 관련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, 지역경제과장, 보건소장으로 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,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소비담당 주사가 된다.

제10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준용)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보조금 신청·교부·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정 이 유

-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·축산업 분야와 형평성을 기하고 관광정선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소상공인, 경영안정지원, 사업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경영안정 지원 대상 등(안 제3조)
 -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, 자문 및 교육 사업 등
- 시설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(안 제4조 ~ 안 제8조)
 -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 시설물 등의 개량, 수리
 -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
 - 최근 3년 이상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
 -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,000만원 한도
 - 지원규모, 선정기준, 절차, 조건 등은 공고
 - 현지조사
 - 관계법령 등 위반시 지원제한 및 취소
-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기능 등(안 제9조 ~ 안 제10조)
 - 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, 임기 3년
 -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 등
-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준용(안 제11조)

제225회 정선군의회(2015. 10. 21.)에서 의결된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1월 9일

정 선 군 수

인

정선군 조례 제2457호

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”를 “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.

1.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: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
2.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: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

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주차요금의 감면)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, 본인이 탑승한 차량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

경감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</u> 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생략)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. 1.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: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	<u>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</u> 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. 1.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: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 2.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: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 <삭제>

여 부과한다.

2.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: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

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 하고 본인이 탑승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2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3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,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4.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를 경감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3조의3(주차요금의 감면)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
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 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, 본인이 탑승한 차량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.
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 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
개 정 이 유

-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제3조의3)
-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 등 조문 정비

제225회 정선군의회(2015. 10. 21.)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1월 9일

정 선 군 수

인

정선군 조례 제2458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84명이며”를 “593명이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73명”을 “582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수 중 10명(동계올림픽 한시정원)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별표 3]

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593	593				
정무직계	1	1				
군수	1	1				
일반직 계	568	568				
4급	1	1				
4급 . 5급	3	2		1		
5급	24	11	2	1	1	9
6급 이하 계	539	539				
전문경력관 계	1	1				
연구직 계	4	4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4	4				
지도직 계	20	20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17	17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정선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584명</u> 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593명</u> 이며 ----- -----.
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73명</u>	1. ----- <u>582</u> 명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개 정 이 유

- 재난안전 조직개편,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전담인력 확충, 맞춤형복지급여 인력증원,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.

주 요 내 용

-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(안 제2조)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: 584명 ⇒ 593명(증 9명)
 - 집행기관의 총수: 573명 ⇒ 582명(증 9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11명(변동 없음)
-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(별표 3)
- 4급·5급: 본청(2), 직속기관(1): 변동없음
 - 5급: 본청(11), 의회(2), 직속기관(1), 사업소(1), 읍면(9): 변동없음
 - 6급이하: (530) ⇒ (539)

제225회 정선군의회(2015. 10. 21.)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1월 9일

정 선 군 수

인

정선군 조례 제2459호

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·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,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사업 등)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정선군지방행정동우회(이하 “행정동우회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자연정화 활동 사업
2. 군정에 관한 계도·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
3.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신청 및 정산)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

②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금의 반환)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.

제5조(행정자료 제공·지원 등) ① 행정동우회는 정선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준용)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「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 정 이 유

- 정선군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지원사업 명시(안 제2조)
 -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자연정화 활동 사업
 - 군정에 관한 계도·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
 -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
 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신청 및 정산(안 제3조)
 -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변경 시,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
 - 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

제225회 정선군의회(2015. 10. 21.)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1월 9일

정 선 군 수

인

정선군 조례 제2460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국내여비지급표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숙박비 (1박당)
제1호	1등급	1등급	정액	정액	실비
제2호	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○ 서울특별시: 70,000 ○ 광역시: 60,000 ○ 그 밖의 지역: 50,000

비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『공무원 여비 규정』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
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개 정 이 유

- 상위 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【별표 1】의 국내여비 지급표 숙박비(1박당)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.

(단위: 원)

구 분	현 행	변 경
제2호	특별시 및 광역시 50,000 그 밖의 지역은 40,000	서울특별시 70,000 광역시 60,000 그 밖의 지역은 50,000

제225회 정선군의회(2015. 10. 21.)에서 의결된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1월 9일

정 선 군 수

인

정선군 조례 제2461호

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여성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 략)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③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당연직 은 관련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<u>자치행정과장</u> , 농업축산과장, 보건소장	1. ----- - <u>여성청소년과장</u> ----- -----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개 정 이 유

-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위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.

주 요 내 용

- 위원회의 구성 변경: “자치행정과장” ⇒ “여성청소년과장”(안 제7조)

규 칙

2015년도 제9회 정선군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정선군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1월 9일

정 선 군 수

인

정선군 규칙 제1261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정 이 유

- 재난안전 조직개편,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전담인력 확충, 맞춤형 복지급여 인력 증원,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,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.

주 요 내 용

-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·직렬별 정원 조정(별표)
 - 총 584명 ⇒ 총 593명(증9명)
 ○ 조정내역
 - 분야별

계	동계올림픽 지원		사회복지 인력보강	재난안전 조직개편
	전담부서 기능강화	문화올림픽		
9명	4명	1명	1명	3명

○ 부서별

계	주민생활지원과	문화관광과	안전건설과	동계지원단
9명	1명	1명	3명	4명
6급 2, 7급 3 8급 2, 9급 2	9급 1 (사회복지)	7급 1(행정)	6급 1(행정·시설) 7급 1(행정·방재) 8급 1(행정)	6급 1, 7급 1 8급 1, 9급 1 (행정)

[별표]

정선군지방공무원직렬별정원표(제2조관련)

직종별	직급별	직 렬 별	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	면
합 계			593	287	11	90	23	88	94
정 무 직			1	1					
일 반 직			568	282	11	70	23	88	94
지 도 직			20	2	0	18	0	0	0
연 구 직			4	2	0	2	0	0	0
정 무 직			1	1					
일반직	4급	지방서기관	1	1					
	4급·5급	지방서기관 · 행정사무관	2	2					
		지방서기관·행정사무관· 농업사무관·시설사무관	0						
		지방기술서기관·보건·간 호·의무사무관	1			1			
	5급	소 계	24	11	2	1	1	4	5
		행 정	5	3	2				
		행 정 · 사회 복지	2	2					
		행 정 · 시 설	4	4					
		행 정 · 농 업	1	1					
		행 정 · 환 경 · 녹 지	1	1					
		행 정 · 환 경 · 시 설	1				1		
		행 정 · 농 업 · 사 회 복 지 · 시 설	6					4	2
		행 정 · 농 업 · 환 경 · 시 설	1						1
		행 정 · 농 업 · 녹 지 · 시 설	2						2
		보 건 · 의 무 · 간 호 · 의 료 기 술	1			1			
	6급	소 계	128	72	3	11	5	17	20
		행 정	47	28	3		1	6	9
		세 무	3	3					
		전 산	1	1					
		농 업	3	3					
		녹 지	2	2					
		시 설	10	10					

일 반 직		환 경	1	1					
		행정·세무	5	3				2	
		행정·사회복지	7	4				3	
		행정·농업	6	1				1	4
	6급	행정·녹지	1	1					
		행정·전산	1						1
		행정·공업	1	1					
		행정·보건	1			1			
		행정·보건·식품위생	1			1			
		행정·환경	2	2					
		행정·시설	6	5				1	
		농업·수의	1	1					
		농업·시설	4	1				3	
		보건·간호	1			1			
		시설·공업	1				1		
		공업·농촌지도사	1			1			
		농업·농촌지도사	1			1			
		행정·농업·사회복지	2					1	1
		행정·환경·공업	1				1		
		행정·환경·보건	1				1		
		행정·농업·시설	5						5
		방송통신·전산	1	1					
		행정·간호·의기	3			3			
		보건진료	3			3			
		운전·기계운영	3	3					
		사무운영·시설관리	2	1			1		
	7급	소 계	175	96	1	23	7	23	25
		행 정	52	31	1			8	12
		세 무	8	7					1
		사회복지	9	4				3	2
		전 산	1	1					
		공 업	1	1					
		농 업	3	3					
		녹 지	2	2					

		보 건	8			8			
		의료기술	3			3			
일 <									

반 <
--

일
